

과징금 분할납부 []허용
[]불허용

신청인	업소 또는 법인명
	납부의무자 성명
	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
	주소
	업소 또는 소재지

부과기간	납부고지 코드번호	부과금액	분할납부 금액	분할납부 기한 간격

분할납부사항		
분할 횟수	납부기한	분할납부 금액
1 차	. . .	
2 차	. . .	
3 차	. . .	
4 차	. . .	
합 계		

「청소년 보호법 시행령」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
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[]허용 []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[]불허용

이
의
이

성평등가족부장관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안 내 말 씀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「청소년 보호법 시행령」 제46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1.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
2.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개시된 경우,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3. 법인이 해산된 경우
4.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